



## '생활규제 개혁, 일상의 자유 회복'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교육 부담 줄인다

- 규제개혁위원회, 법정 의무교육 개선 -

- ✓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시 식품위생 신규교육(집합, 6시간)을 정기교육(온라인 가능, 3시간)으로 대체
- ✓ 같은 시·도에서 유사 업종 영업시 식품위생 정기교육(연 3시간) 1회만 실시 (현재는 시·군·구마다 교육 이수)
- ✓ 2.4만개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완화(6시간→3시간)
- ✓ 자영업자 등 교육 및 지원사업 등을 업종별로 한눈에, '통합 플랫폼' 구축

□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(공동위원장: 국무총리/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, 이하 위원회)는 26일 16:00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법정 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·의결했다.

- 이는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현장을 찾았을 때 교육에 참가한 자영업자, 소상공인들로부터 들었던 창업, 영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,
- 위원회는 자영업자, 소상공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교육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, 교육을 받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'법정 의무교육 개선방안'을 마련했다.

□ 우선, 과도한 교육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·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.

- 100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의 경우,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(집합교육, 6시간)을 정기교육(온라인 가능, 3시간)으로 대체한다. 다른 업종과 달리 유흥주점에

대해서만 영업자 외에 종업원(유흥종사자)도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유흥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폐지한다.

○ 또한 식품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·도 내에서 유사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(현재는 같은 시·군·구내일 경우에만 인정),

-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운영업자로서 받은 식품위생교육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교육은 면제한다.

○ 찜질방, PC방, 실내놀이터 등 약 2.4만개소에 달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하고,

-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(6시간)을 면제하여 보수교육만 받도록 한다.

□ 반드시 필요한 교육은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.

○ 소상공인·자영업자가 창업, 영업 과정에 숙지해야 하는 세무·노무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업종별로 특화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, 소상공인 지식배움터(온라인) 등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.

○ 현재 법,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·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·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개편하여 현장 활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.

○ 또한, 음식점·노래방·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을 구성하고, 안전체험관·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.

-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·자영업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이나 지원사업을 업종별로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.
  - 중소벤처기업부의 ‘소상공인 24’를 통해 업종별 법정교육 및 세무·노무 관련 정보, 정부·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, 관련 부처나 기관별 홈페이지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.
-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각종 법령 등을 통해 신설·강화되는 교육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  - 교육의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「행정규제기본법」(제8조의2)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교육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.
  - 또한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규정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하여 양질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.
- 김종석 위원장은 “경제활력을 제고하면서 위생·안전 등 법정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효성 있고 유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.”고 강조하며, “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※ 【붙임1】 법정의무교육 주요 개선사례

【붙임2】 규제개혁위원회 개요

담당 부서	규제조정실	책임자	과 장	박은경 (044-200-2412)
	규제심사관리관실	담당자	사무관	신현재 (044-200-2436)



**① 연간 100만명의 자영업자가 이수하는 식품위생교육 합리화**

- ▶ **(현황)** ①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 영업을 하다가 폐업 후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할 때, 신규교육 이수 후 2년 및 보수교육 이수 후 1년이 경과된 경우 **신규교육(집합, 6시간) 재이수 필요**  
 ②식품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**같은 시·군·구내 유사업종**(예: 휴게음식점-일반음식점-제과점)을 영업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에 대해 **교육 이수 인정**
  - ▶ **(개선)** ①**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정기교육(온라인 가능, 3시간)으로 대체하여 영업자의 부담 완화**  
 ②**유사업종에 대한 정기교육 같은 지역을 '같은 시·도내'까지 확대**
- ☞ **식품의약품안전처 /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개정**

A 씨는 식당을 10년간 운영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업하였다. 2년 후, 동일한 식당을 다시 열기로 한 A 씨는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 받았던 신규교육(집합교육)을 굳이 또 이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.

B 씨는 ○○도 □□시에서는 분식점(휴게음식점)을, △△시에서는 한식당(일반음식점)을 운영하고 있다. 두 가게가 인접해 있어 B 씨가 직접 오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, 위치한 시·군·구가 달라 식품위생교육을 1년에 2차례씩 받아야 하여 부담이 크다.

☞ **동일업종 재창업시 신규교육 대신 정기교육을 이수하면 되며, 같은 시·도내에서 유사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1번의 정기교육 이수만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.**

- ▶ **(현황)** ①**유흥주점의 경우 다른 식품위생 영업과 달리 영업자 외 유흥종사자(2시간)도 식품위생교육 이수 필요**  
 ②**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직접 위생관리책임자 직무 수행시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교육(3시간)을 중복 이수 필요**
  - ▶ **(개선)** ①**유흥종사자를 식품위생교육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타 업종 종업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**  
 ②**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한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직접 위생관리책임자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,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중복되는 교육 면제**
- ☞ **식품의약품안전처 / 「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」 개정**

유흥종사자로 취업한 C 씨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. 예전에 식당 종업원으로 일할 때는 교육대상이 아니었는데, 유흥주점은 왜 영업자뿐만 아니라 유흥종사자까지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.

공유주방을 운영하는 D 씨는 본인이 직접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을 갖추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. 공유주방 운영업자로서 매년 3시간씩 식품위생교육을 받고 있는데, 위생관리책임자로서도 똑같은 교육을 이수해야 하다 보니 불편하다.

☞ **유흥종사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되며,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직접 위생관리책임자 직무 수행시 위생관리책임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은 면제받게 된다.**

## ② 2.4만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부담 완화

- ▶ **(현황)** 다중이용시설(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)의 소유자 등은 **실내공기질 관리 신규교육(1년 내 6시간) 및 보수교육(3년마다 6시간) 이수**(‘22년 8,201명 수료) 필요
- ▶ **(개선)** 보수교육시간을 **완화(6시간→3시간)**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교육을 **효율화**하고, 시설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시에 시설관리자 등이 신규교육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보수교육 이수 의무만 적용(신규교육 면제)

☞ 환경부 /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

A 씨는 330 m<sup>2</sup>(약 100 평) 규모의 PC 방을 10 년째 운영하고 있다. PC 방이 면적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됨에 따라, A 씨는 소유자로서 3 년마다 6 시간의 실내공기질 관리교육을 받고 있다. 평상시에도 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영업을 하는데, 3 년마다 6 시간이나 되는 교육을 듣는 것이 시간 대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.

B 씨는 1,100 m<sup>2</sup>(약 330 평) 규모의 찜질방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, 1 년 후 동일한 규모로 찜질방을 다시 개업하였다. 찜질방이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어 과거에 실내 공기질 관리 신규교육을 이수했던 B 씨는 예전과 같은 시설을 개업함에도 신규교육 부터 다시 이수해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.

☞ 보수교육 시간이 6 시간에서 3 시간으로 **완화**되고, **동일업종으로 재창업**하는 경우 신규교육이 **면제**되어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.

## ③ 수요자 맞춤형 통합 플랫폼을 통해 업종별 교육·지원 정보를 한눈에

- ▶ **(현황)** 소상공인·자영업자가 영업·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나 자신이 **이수해야 할 법정 의무교육** 등을 **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움**(각 기관별 홈페이지 방문 필요)
- ▶ **(개선)** 수요자 맞춤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, 교육 등 정보를 **일괄 제공**하고, **기관별 홈페이지를 연계**하여 편의 제고

☞ 중소벤처기업부 / 수요자 맞춤형 통합 플랫폼 구축(‘소상공인 24’ 연계)

자영업자 A 씨는 식품위생교육, 소방안전교육, 산업안전보건교육, 성희롱예방교육,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여러 종류의 법정 의무교육도 이수하여야 하고, 정부·지자체의 지원사업도 신청하고 싶다. 하지만 언제, 어디서 교육을 듣고 지원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는지가 어려워서 매번 혼란스럽다. 영업에 필요한 정보나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한번에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았지만 해결하지 못했다.

☞ **통합 플랫폼**을 통해 교육·지원사업 등 **다양한 정보**를 **한눈에 쉽게** 알 수 있게 된다.

#### ④ 반드시 필요한 교육은 내실화하여 실질적인 도움 제공

- ▶ **(현황)** ① 자영업자·소상공인은 세무/노무 교육을 영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으로 생각하나, 관련 교육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아 애로 발생
    - ②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의 설명 위주의 교육으로 소상공인·자영업자가 겪을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·유출 사례\*를 위주로 한 교육콘텐츠가 거의 없음
  - \* △고객정보를 활용한 멤버십 운영시 주의사항 △예약, 배달시 수집된 고객정보에 대한 처리 등
  - ▶ **(개선)** ① 업종별 세무·노무 관련 필요한 정보를 수요조사하여 특화된 교육콘텐츠 개발,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등을 통해 상시 지원
    - ② 소상공인·자영업자가 겪을 수 있는 최신 법 위반 사례에 대한 현장교육과 함께 온라인교육 추가(플랫폼 통해 제공) 등을 통해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
- ☞ 중소벤처기업부 / 업종별 특화 교육콘텐츠 개발 및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제공  
개인정보보호위원회 / 법 위반 사례 현장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콘텐츠 개발

자영업자 A 씨는 매출과 직원, 고객이 늘어나면서 세무·노무·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. 이에 시간을 내어 관련된 교육을 인터넷으로 찾아 들어봤지만, 실제 영업에 도움이 될 내용은 별로 없어서 실망하였다. 혹시라도 영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불안하다.

- ☞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#### ⑤ 교육 규제 신설·강화시 인센티브(우수자 교육 면제 등) 신설 의무화

- ▶ **(현황)** 영업을 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고 교육 결과가 우수하여도 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등 부담
  - ▶ **(개선)** 교육 관련 규제를 신설·강화시, 평가결과 및 교육실적 등이 우수한 교육대상자는 교육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 신설 의무화
- ☞ 규제개혁위원회 / 교육훈련 규제 신설·강화 심사시 인센티브 신설 의무화

A 씨는 20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법을 위반한 적도 없고,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도 항상 충실히 받고 있다. 다 아는 내용인데도 교육을 안 받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니 매년 바쁜 영업시간을 쪼개 교육을 받아야 하는게 답답하다.

- ☞ 규제개혁위원회는 교육 필요성이 낮은 점검·평가 우수자 등에 보수교육 면제 등 인센티브를 마련토록 권고하여 성실 교육대상자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.

□ **설치 및 구성**

- (설치)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('98.4.16 발족,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)
- (구성) 위원장 2인(국무총리·민간위원장) 포함, 20~25인으로 구성(법 제25조)
  - 당연직(8) : 국무총리(위원장), 기재부·행안부·산업부·중기부 장관, 국조실장, 공정거래위원장, 법제처장
  - 위촉직(17) :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

□ **기능**(법 제24조)

-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·발전
- 기존규제의 심사,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
-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,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
-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·평가 등

□ **역할**

- (신설·강화규제 심사)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·개정시 신설·강화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 심사 의무화 (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)
  - 중앙행정기관장이 규제심사 요청시 10일 이내 중요규제 여부 결정 및 45일 이내 규제 철회 또는 개선 권고 등 심사 완료(법 제11~14조)
- (기존규제 점검·정비) 규제정비종합계획 부처별 이행점검,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 정비 등을 통해 기존규제 정비 등 추진